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항암을 목적으로 하는 ‘혈맥약침술’이 이른바 법정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는 동일·유사하지 않아,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대법원의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술 사이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항암을 목적으로 하는 ‘혈맥약침술’이 이른바 법정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는 동일·유사하지 않아,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韓藥) 약 0.1~수mL 전후를 혈관을 피해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즉, 약침술은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는,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의료기술입니다.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 약 20~60mL를 정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의료기술이라고 평가됩니다.

약침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이른바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곧, 의료인은 환자에게 약침술을 시술하면서, 시술 대가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맥약침술은 이 사건 고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시술하면서, 시술 대가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시술하였어도 원칙적으로 시술 대가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하지 아니하여, 혈맥약침술이 이른바 임의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는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인이 이른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인인 원고는 혈맥약침술을 시술하면서 환자로부터 920만 원을 수취하였고,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에 대하여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피고 처분의 적법성이 긍정되었고, 결국 원고는 위 진료 대가를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술 사이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바이오·제약·헬스케어팀



최승수 변호사
T. 02-6200-1759
E. sschoi@jipyong.com



김성수 변호사
T. 02-6200-1716
E. sskim@jipyong.com

Newsletter PDF Download
뉴스레터 신청 | 해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